

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

대상 조합	조합 명칭
	대표자
	사업시행구역의 위치
조합 설립 인가 취소 내용	조합설립인가 취소 예정일
	조합설립인가 취소사유
	그 밖의 사항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